

## 교원연구실적평가시행에관한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이하 ‘평가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천대학교(이하 ‘본교’ 한다)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적물의 구분)** ①연구실적물은 논문, 저술, 외부수탁연구비 및 지적 재산권으로 구분한다.

②연구실적물의 소속(affiliation) 표기는 본교 단독 소속으로 표기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다만, 신규임용이후 3년 이내 출판된 실적에 대해서 이중소속(커런트어드레스 포함)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3조(논문)** ①모든 논문은 체제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판된 논문으로 해당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술연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12.20.)

②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게재지에 이중으로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다만, 증례 또는 치험례는 해당 배점의 50/100만 인정한다. 또한 Editorial, Letter to the Editor, Short survey 유형의 논문에 대하여는 SCI급은 해당배점의 10/100만 인정하고, SCOPUS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1. 국제저명학술지 : (1)해당년도 Arts& Humanities Citation Index(A&HCI)에 등재된 전문 외국어(영어)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2.07.01)

(2)해당년도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에 등재된 학술지로 논문 발행일 현재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Impact Factor가 해당 전공분류 내에서 상위 50% 이내에 드는 전문 외국어(영어)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2.07.01, 2015.06.16.)

(3)해당년도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등재된 학술지로 논문 발행일 현재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Impact Factor가 해당 전공분류 내에서 상위 30%이내에 드는 전문 외국어(영어) 학술지를 말한다.(신설 2015.06.16.)

2. 국제전문학술지 : (1) 해당년도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에

### 3-2-3~2 제3편 행 정

등재된 전문 외국어(영어)학술지로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2.07.01)

(2) 해당년도 Science Citation Index(SCI)에 등재된 전문 외국어(영어)학술지로 논문 발행일 현재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Impact Factor가 해당 전공분류 내에서 상위 70% 이내에 드는 전문학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7.01)

(3) 해당년도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에 등재된 전문 외국어(영어)학술지로 논문 발행일 현재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Impact Factor가 해당 전공분류 내에서 상위 30% 이내에 드는 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2.07.01)

3. 국제일반학술지 : (1)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은 SCI급 등재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2.07.01)

(2) 해당년도 SCOPUS에 등재된 전문 외국어(영어)학술지를 말한다.(개정 2012.04.20., 2012.07.01)

4. (삭제 2012.07.01)

5. 국내저명학술지 : 해당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개정 2012.07.01)

6. 국내전문학술지 : 해당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인문사회계열만 인정함) (개정 2012.07.01)

7. (삭제 2012.07.01.)

8. (삭제 2012.07.01.)

9. (삭제 2014.02.27.)

10. (삭제 2014.02.27.)

**제4조(저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로서 국제표준번호(ISBN)가 있어야 하며 초판으로서 200쪽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문학술저서 : 전공분야의 이론 및 학설을 정립하여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형태의 저서로서 학술적 성격의 충실한 각주와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저서를 말한다. 다만, 개인논문 모음집 형태의 저서는 학술저서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저서의 내용이나 독창성 여부를 판단하여 전문학술저서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일반학술저서 : 전공분야 학부생을 위한 전공분야 입문서·개론서·원론 등의 대학교재용 학술서와 전문학술저서 요건에 미달하는 학술저서를 말한다. (개정 2014.02.27.)

3. (삭제 2015.12.29.)
4. 번역서 :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하고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번역서 포함)을 말한다. 다만, 편역서는 배점의 50/100을 인정한다.
5. (삭제 2015.12.29.)
6. 창작단행본 : 전공과 관련 있는 서적으로 문화관광부 등록출판사에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시, 수필, 소설, 문학평론 등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한 저서(초판, 1000부 이상 발행)를 말하며 실적인정조건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출판계약서 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업적으로 인정받은 창작물을 모아 출간한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7. (삭제 2015.12.29.)
8. ISBN과 상관없이 연속된 저서(상. 하권, 1,2권 등)는 1권으로 인정한다.
9. 단체나 기관이 공동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도 공동연구원 수에 포함한다.
10. “국제전문서적”이라 함은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국외의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문학술서적을 말한다.
11. (저술평가의 불인정) 학술자료집, 편람,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평, 평론, 해설, 서평, 원격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안, 일반인용 교양서적, 초·중·고 교과서, 기념논문집, 수험서, 강연 자료, 기조발표, 참관기, 여행기, 여러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 엮은 핸드북(handbook), 각종 기고문을 편집한 저서, 공공단체나 학회 명의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자문보고서 형식의 저술 등 제4조 1호~6호에 명기되지 않은 이외의 저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외부수탁연구)** ①교원의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은 본교 및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받아 연구비 중앙관리를 받는 순수연구비(세부위탁비 지급액을 제외) 중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입금액에 한하여 인정하되 반환액에 대한 감점은 없으며, 실적 산정기준은 별표1-2의 산학협력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른다.(개정 2013.10.01., 2015.12.29., 2016.11.29., 2018.09.20.)

②교외연구비를 본교 교원이 공동으로 수탁한 경우 참여 교원의 연구비 수탁액 산정은 입금된 교외연구비를 기준으로 연구책임자가 50%, 그 외의 참여 교원은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참여 교원 수로 나머지 교외연구비를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10.01., 2015.12.29.)

**제6조(지적재산권)** ①특허의 발명권자로서 특허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

### 3-2-3~4 제3편 행정

허권자가 본 대학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외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하나만 인정한다.

②국제특허는 G7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는 국내특허로 인정한다.

③실용신안은 기술평가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점수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권리가 가천대학교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SW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등록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권자가 본 대학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5.08.28.)

**제7조(기술이전료)** 기술이전은 지적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특허를 획득한 기술 등을 외부 제3자에게 실시(전용실시, 통상실시, 양도)한 실적을 말하며, 본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때 실적 산정 기준은 별표1-2의 산학협력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른다.(개정 2014.12.24., 2018.09.20.)

**제8조(기타 산학협력실적)** (개정 2018.02.22.) ①현장실습지도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기술·경영자문은 산업체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한 실적을, 가족기업유치관리는 가족기업 모집실적을 의미한다. 다만, 실적 산정기준은 별표1-2의 산학협력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른다.(신설 2014.03.31. 개정 2014.12.24., 2018.09.20.)

②현장실습지도 인정기준은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현황 기준에 따라 기업체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4주(160시간)이상의 현장실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또한, 인턴십지도 인정기준은 4주(160시간)이상의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2.24., 2017.01.20., 2018.02.22., 2018.09.20.)

③기술·경영자문 실적은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약을 통한 기술경영자문실적에 한하여 각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4.12.24., 2017.01.20., 2018.09.20.)

④가족기업유치관리는 기업지원센터를 경유하여 승인된 가족기업 모집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14.12.24., 개정 2018.02.22., 2018.09.20.)

⑤교원의 창업실적은 소속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가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규창업, 자회사 수익기여, 학교기업 수익기여, 실험실창업, 벤처창업·신기술창업으로 나누며, 수익기여에 대한 실적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한다.(신설 2018.02.22., 개정 2018.09.20.)

**제9조(창작 및 실기활동)** ①건축계열, 예체능계열의 창작과 실기활동에 관한

실적은 전공분야 실적에 한하며 창작자료, 팸플릿, 포트폴리오 등의 결과물 (CD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개인전시, 발표, 연주회 등에서 발표한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평점인 한 가지 역할만을 인정한다.

**제10조**(연구실적물의 평정기준)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정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6”의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와 같다.(개정 2012.08.10)

**제11조**(공동연구 실적물의 평정) ①논문실적 인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정하되 n(저자 수)이 10이상인 경우 10으로 간주한다.

1. 주저자 :  $2/(n+1)$  단, 본교 교원 2인 주저자 시  $1.5/(n+1)$   
(개정 2014.06.23., 2015.12.29., 2017.03.01., 2018.08.23.)
2. 공저자 :  $1/(n+1)$
3. 모든 공저자가 같이 공헌하였다는 문구가 있을 시 :  $1/n$  (개정 2014.06.23.)
4. 교신저자로의 인정은 발표논문집에 교신저자로 명기된 경우에 한하며, 달리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회장(편집장)의 공식적인 확인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5. 기초의과학부 전임교원이 주저자인 논문 실적의 평정에서 저자로 참여한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임상의학 전임교원은 n(저자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2.24.)

②저서의 실적 인정비율은  $1/n$ (저자 수)로 하되, n이 10이상인 경우에는 10으로 간주한다.

③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실적 인정비율은  $1/n$ 로 한다. 이때, n은 발명자 수를 말한다.

④SW등록에 대한 실적 인정비율은  $1/n$ 로 한다. 이때, n은 창작자(저작자) 수를 말한다.(개정 2015.08.28.)

**제12조**(가산점 및 주저자 인정) ①세계 3대 과학잡지(Science, Nature, Cell)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별표1-1)학문분야별 JCR IF 상위1%이내 배점을 적용하고, 표지논문 주저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1%이내 배점의 2배를 부여한다.(개정 2014.12.24., 2015.12.29.)

②논문에서 주저자라 함은 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말하며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본교 교원인 경우에는 최대 2인까지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주저자(본교 2인) 논문의 Impact Factor 지수에 대한 인정 점수 환산은 50/100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8.03.27., 2018.08.23.)

### 3-2-3~6 제3편 행정

③제1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저자 1인만 제1저자로 인정하며, 교신저자가 2인인 경우 순서와 관계없이 2인 모두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다만, 교신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교신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4.02.27., 2018.03.27.)

**제13조**(주관부서) (별표 1)의 연구부문실적과 관련한 업무는 연구처에서 주관하고, (별표 1-2)의 산학협력부문실적과 관련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한다.(신설 2016.11.29.)

####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세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세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논문) 제3항 제1호의 (2)는 해당논문의 투고일 기준 2012년 8월 31일이전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박사학위논문인정에대한경과조치) 박사학위논문은 2014년 0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03월 01일 이후 발표된 연기예술학과 실기실적 평가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12월31일 까지 출판되는 저서 및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교외연구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5년 09월01일 이후 발표된 공연전시 실적에 대해서 본 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 3-2-3~8 제3편 행 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11월30일 까지 투고된 논문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별표1-3)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02월28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제3조 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별표1-2)의 ‘국내특허 등록’ 배점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28일 이전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경우, 출원일자기준 2018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세칙 제11조 1항 1호 및 제12조 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07월 31일까지 투고된 논문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세칙 (별표1-2)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출원된 국내특허에 관한 평가항목별 배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세칙 (별표1-2)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에 의거 재직 중인 교원은 차후 재임용 심사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의거 평가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04.20., 2012.07.01., 2014.02.27., 2014.03.31., 2014.12.24, 2015.06.16.2015 08.28., 2015.12.29., 2016.11.29., 2018.02.2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구분	상세구분	업 적 내 용	배 점	
연구 실적	논 문 (1편당)	국제저명 학술지	(1) A&HCI 학술지	450
			(2) SSCI 학술지 중 IF 상위 50%이내	별표 1-3 참조
			(3) SCI 학술지 중 IF 상위 30%이내	
		국제전문 학술지	(1) SSCI 학술지 중 IF 상위 80%이내	
			(2) SSCI 학술지 중 IF 상위 80%초과	
			(3) SCI 학술지 중 IF 상위 70%이내	
	국제일반 학술지	(4) SCIE 학술지 중 IF 상위 30% 이 내		
		(1)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이외의 SCI급 학술지		
		(2) Scopus 학술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120 105
		국내저명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00
		국내전문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인문사회계열만 인정)	70
	저 술 (1권당)	전문 학술저서	국제전문서적	200
			국내전문서적	150
		일반 학술저서	대학교재용 학술서적	120
학술번역서		학술번역서(외국어로 번역)	70	
		학술번역서(한글로 번역)	50	
창작단행본	시, 소설	100		

1. SCI급 학술지 : A&HCI, SSCI, SCI, SCIE
2. 소프트웨어학과 및 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원의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50점으로 인정하며, 해당 점수는 평가 시 국제일반 학술지(SCIE) 논문실적점수에 합산할 수 있다.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 학술대회 논문 발표일자 현재 제공되는 가장 최근의 BK21플러스사업에서 명시하는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에 등재된 학술대회

(별표 1-1) (신설 2013.08.30., 개정 2014.02.27., 2015.12.29., 삭제 2016.11.29.)

(별표 1-2) (신설 2016.11.29., 개정 2017.01.20., 2018.02.22., 2018.08.23.)

**산학협력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

구분	상세 구분	업 적 내 용		배점	
산학협력교육실적	산업체교육	계약형 학과운영(교육부 인정 계약학과수입/100만원/교육참여 교원수)		연간최대 50점	
	산학협력학생지도(학부,대학원 포함)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1명당 1점) 학생창업자 지도 (5점/건) 창업동아리 지도 (2점/건) 학생취업 (5점/인)		연간최대 30점	
산학협력연구실적	외부수탁연구(비)	이공계열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100만원당 0.5점 단, 순수 산업체 연구비 : 100만원당 1점	100만원당 1.5점 단, 순수 산업체 연구비 : 100만원당 3점		
	지적재산권	국제특허 등록			150
		국내특허 등록			30
		실용신안 등록			10
		상표권 등록			10
		디자인권 등록			10
		반도체배치설계권 등록			10
	SW개발	SW등록			3(연간최대 20점까지 인정)
	기술이전	100만원당 2점			2점~
산업체기술지도	기술·경영자문(1점/500만원,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약 및 수입금액 기준)			연간최대 10점	
산학협력봉사실적	교원창업	자회사 신규창업(가천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100점
		자회사 수익기여(산학단 수익 기여분)			1점/100만원
		학교기업 수익기여(수익금중 산학단 진출금)			
		실험실창업			10점
		벤처창업·신기술창업			10점
	가족기업 유치관리	가족기업 유치 1점/기업 (기업지원센터 경우 실적)			연간최대 10점
	산학협의회 운영	10개 기업 이상, 연 4회 이상 모임 개최 협의체 (5점/건, 기업지원센터 경우 실적 참여율 분배)			연간최대 10점

3-2-3~12 제3편 행정

(별표 1-3) (신설 2016.11.29., 개정 2017.02.23.)

국제학술지 배점표

Journal Ranking구간	SCI	SCIE	SSCI
1%이내	1000	900	1000
1%초과 ~ 2%이내	760	684	830
2%초과 ~ 3%이내	680	612	750
3%초과 ~ 4%이내	610	549	680
4%초과 ~ 5%이내	550	495	640
5%초과 ~ 6%이내	500	450	620
6%초과 ~ 8%이내	460	414	600
8%초과 ~ 10%이내	430	387	580
10%초과 ~ 12%이내	410	369	560
12%초과 ~ 14%이내	390	351	540
14%초과 ~ 16%이내	370	333	520
16%초과 ~ 18%이내	350	315	500
18%초과 ~ 20%이내	330	297	480
20%초과 ~ 22%이내	310	279	460
22%초과 ~ 24%이내	290	261	440
24%초과 ~ 26%이내	275	248	420
26%초과 ~ 28%이내	260	234	400
28%초과 ~ 30%이내	245	221	380
30%초과 ~ 35%이내	230	207	360
35%초과 ~ 40%이내	215	194	340
40%초과 ~ 45%이내	200	180	320
45%초과 ~ 50%이내	190	171	300
50%초과 ~ 55%이내	180	162	280
55%초과 ~ 60%이내	170	153	260

교원연구실적평가시행에관한세칙 3-2-3~13

Journal Ranking구간	SCI	SCIE	SSCI
60%초과 ~ 65%이내	160	144	245
65%초과 ~ 70%이내	150	135	230
70%초과 ~ 75%이내	145	131	215
75%초과 ~ 80%이내	140	126	200
80%초과 ~ 85%이내	135	122	190
85%초과 ~ 90%이내	130	117	180
90%초과 ~ 95%이내	125	113	170
95%초과	120	108	160
JCR값 제공 없음			150
한글논문			

❖ 한글A&HCI논문은 한글SSCI논문의 배점을 적용함.(신설 2017.09.26.)

(별표 2)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음악)

구 분		업적내용	배 점		
			국제 급	국내 A	국내 B
음악 대학 공동	지휘	국내외 1인 전문오페라 및 교향악단 지휘	200	100	50
	음반	1인 음반 출반	80		
		2인 공동 음반 출반	40		
		3인 공동 음반 출반	20		
		4인 이상 공동 음반출반	10		
작 곡		국내외 1인 작곡 발표회	200	100	50
		관현악곡, 교향곡, 오페라, 뮤지컬, 무용(2막 이상), 미사, 칸타타, 오라트리오 작곡 발표회	200	100	50
		10인 이상 실내악 발표	140	70	35
		5~9인 실내악, 합창곡 작곡발표	120	60	30
		2인 공동 작곡발표	100	50	25
		2~4인 실내악	100	50	25
		1인 연주곡 작곡발표, 가곡 작곡발표	80	40	20
성 악		독창회	200	100	50
		오페라 주연	200	100	50
		오페라 조연	100	50	25
		독창 협연	140	70	35
		2인 발표회	100	50	25
		3인 발표회	60	30	15
		4인~10인 발표회	40	20	10
피아노		독주회	200	100	50
		협연 독주	140	70	35
		협연 2중주	100	50	25
		피아노 듀오	100	50	25
		협연 3중주	60	30	15
		실내악 3중주 이상	40	20	10
	반 주	전체 프로그램	140	70	35
		2인 공동반주(50% 이상)	60	30	15

구 분	업적내용	배점		
		국제 급	국내 A	국내B
관현악	독주회	200	100	50
	협연 독주	140	70	35
	협연 2중주	100	50	25
	협연 3중주	60	30	15
	2인~4인 실내악	60	30	15
	5인~10인 실내악	40	20	10

❖ 음악대학 평가항목 인정기준

1. 음악계열 연구실적 평가 대상은 국내·외의 전문공연장에서 개최한 개인 발표회(작곡, 독주, 독창)와 음반출반 그리고 국제음악제 또는 공인된 단체와의 공연 시 작곡발표, 독주, 독창, 협연, 지휘 등이다. 다만, 개인작곡발표회는 프로그램 중 전체 연주곡의 1/2이상이 초연곡이어야 하고 4중주 이상의 초연 작품을 반드시 포함하되 독주곡(1인 연주자)은 2곡 이내로 제한한다.
2. 개인발표회는 60분이상의 기준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기준시간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배점의 50/100을 인정한다.
3.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로 CD(팜플렛 포함) 또는 해당 동영상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레퍼토리 재연은 첫 연주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까지는 불인정하고 3년 이후(4년차)부터는 해당 배점의 80/100을 인정한다.
5. (음반출간) 음반출간을 목적으로 모든 작품을 녹음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기 실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실적을 음반으로 출간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전공과 관련 없는 창작발표 및 공연활동, 수업과 연관된 연주회 및 봉사, 친목차원의 음악회 출연, 교육활동(학생들 연주회 지휘 등), 종교활동 및 성가(종교적 성악곡)를 포함한 개인발표회나 연주곡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동일 실적인 경우 연주, 음반출반 중 평가배점이 높은 1개 분야만 인정하고 동일 연주회에서 다역한 경우에도 평가배점이 높은 1개 분야만 인정한다.

3-2-3~16 제3편 행정

8. 편곡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곡 작곡발표는 년 1곡만 인정한다.
9. 국제급이라 함은, G8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전문공연장(800석 이상)에서의 개인발표회(작곡, 독주, 독창, 오페라, 협연 등) 및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음악제에서의 작곡발표를 말한다.
10. (별표 2-2)에 해당하는 외국 저명 연주홀에서의 연주회 또는 저명 오케스트라와의 공연은 국제급으로 인정하고 해당 평가점수의 50/10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1. 국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전문공연장에서의 공연은 공연장 규모를 기준으로 500석 이상은 국내A급으로, 500석 이하는 국내B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공연장 규모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국내 A급 공연장이라 함은, (별표2-1)과 같다.
13. 국내A급 공연장에서 (별표 2-3)에 명기된 국내 우수 연주단체 및 오케스트라와 공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의 50/10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4. 국내 B급 공연장이라 함은, 국내A급 공연장 외의 전문공연장을 말한다. 다만, 소규모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된 전문공연장이어야 하고, 대학 및 초·중·고교 강당 및 종교기관 연주홀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15. 국내B급 공연장에서 (별표 2-3)에 명기된 국내 우수 연주단체 및 오케스트라와 공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의 50/10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6. 지휘 비전공자(임용시 전공이 아닌 경우)는 1회 해당 배점의 30/100, 년 100% 이내로 전문오페라 및 교향악단 지휘만 인정하되 겸직으로 인한 지휘실적은 최대 년 30%이내로 인정한다.
17. 관현악 전공자의 경우 세부전공(악기)과 불일치하는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18. 음악회 전체 프로그램에서 1개 작품만 연주할 경우 연주된 곡목 수에 따라 기여도를 계산한다.  
(예)  $1/n$ (연주된 곡목 수)로 산정  
-> 국내A급 무대에서 듀오 음악회 1곡 연주 시:  $50\% \times 1/6 = 8\%$
19. 음악 대학의 논문게재는 인문사회계열에 준한다.
20. 공연장의 등급조정 및 유사등급 인정에 따른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타당한 건의가 있을 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등급조정을 할 수 있다.

(별표2-1) (개정 2016.09.30.)

국내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의 전당</li> <li>• 금호아트홀</li> <li>• 세종문화회관</li> <li>• (삭제 2016.09.30.)</li> <li>• 국립국악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산아트홀</li> <li>• KBS홀</li> <li>• 국립극장</li> <li>• 호암아트홀</li> <li>• 성남아트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 2016.09.30.)</li> <li>• 장천아트홀</li> <li>• (삭제 2016.09.30.)</li> <li>• 경기도문화의전당</li> <li>• 인천국립문화예술회관</li> <li>• 국립민속국악원(신설 2016.09.30.)</li> <li>• 국립남도국악원(신설 2016.09.30.)</li> <li>• 국립부산국악원(신설 2016.09.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문화예술의전당</li> <li>• (삭제 2016.09.30.)</li> <li>• 대구 문화예술회관</li> <li>• 광주 문화예술회관</li> <li>• 부산 문화회관</li> </ul>		

(별표2-2)

외국 저명 연주홀 및 저명 오케스트라	
저명 연주홀	저명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네기 홀</li> <li>• 링컨센터</li> <li>• 베를린 필하모니 음악당</li> <li>•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li> <li>•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li> <li>•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li> <li>•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li> <li>•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li> <li>•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i> </ul>

(별표2-3) (개정 2016.09.30.)

국내 저명 연주단체 및 저명 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립교향악단</li> <li>• 성남시립교향악단</li> <li>• 수원시립교향악단</li> <li>• 광주시립교향악단</li> <li>• (삭제 2016.09.30.)</li> <li>•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S교향악단</li> <li>• 대전시립교향악단</li> <li>• 대구시립교향악단</li> <li>• 전주시립교향악단</li> <li>• 제주시립교향악단</li> <li>• 코리아안챔버오케스트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립교향악단</li> <li>• 인천시립교향악단</li> <li>• (삭제 2016.09.30.)</li> <li>• 청주시립교향악단</li> <li>• (삭제 2016.09.30.)</li> <li>• 전 국 도 립 교 향 악 단(신설 2016.09.30.)</li> <li>•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신설)</li> </ul>

3-2-3~18 제3편 행정

	2016.09.30.) • 국립국악관현악단(신설 2016.09.30.) • KBS국악관현악단(신설 2016.09.30.) • 전국시립국악단(신설 2016.09.30.)
--	---

(별표 3) (개정 2015.12.29.)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미술·디자인)**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적내용
전시	개인전	국제저명	200	(별표3-1)
		국제공인	150	(별표3-2)
		국내A급	100	A급 전시장 인정기준에 의함
		국내B급	50	A급 이외의 국내 화랑 (2가지이상 요건 충족시)
	2인전	국제저명	100	(별표3-1)
		국제공인	75	(별표3-2)
		국내A급	50	A급 전시장 인정기준에 의함
		국내B급	25	A급 이외의 국내 화랑 (2가지이상 요건 충족 시)
	단체전 (3인이상)	국제저명	60	(별표3-1)
		국제공인	45	(별표3-2)
		국내A급	30	A급 전시장 인정기준에 의함
		국내B급	15	A급 이외의 국내 화랑 (2가지이상 요건 충족시)
전시 기획	A급	100	세계적규모의 전시기획 및 총감독 (10개국 이상)	
	B급	30	A급 전시장 이상에서의 총감독 (3개국 또는 10개기관이상)	
공모전 수상	A급	100	(별표3-3) 해당 공모전 1위~3위권	
	B급	50	(별표3-3) 해당 공모전 1위~3위권	

❖ 미술디자인대학 평가항목 인정기준

1. 전시, 설치, 디자인, 영상 등의 창작 예술품의 발표를 뜻하며 전공과 관련 없는 전시, 기획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개인전은 1인이 독립적으로 기획 발표하는 전시회를 말하며 단체전으로 기획된 개인 전시회(Booth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개인전은 전시작품 중 반드시 신작(미공개 작품)을 기준 작품 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신작 수는 회화와 평면미술, 영상은 12점, 디자인 분야는 10점 (사진과 같은 Edition 영역은 12점), 설치 및 조각은 8점 이상이어야 인정할

3-2-3~20 제3편 행 정

수 있다. 단, 해당 작품이 수록된 도록(팜플렛)과 전시장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이 수록된 저장매체를 제출하여야 인정할 수 있다.

4. 작품면적이 165㎡이상인 설치 및 평면, 조각의 초대형 작업은 신작(미공개 작품) 수가 기준치에 미달되더라도 학술연구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전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2인전은 신작(미공개 작품)이 회화 및 평면미술, 영상, 사진은 6점, 디자인은 5점, 설치 및 조각은 4점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6. 작품전시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작품의 전시(순회전시, 재전시 등)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전에 업적으로 인정받은 작품만을 모아 개최한 개인전도 인정하지 않는다.
7. 기 전시되었던 전시작품 중 일부를 교체하여 시공간을 달리해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신작의 비율 및 종전작품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문서로 밝혀야 하고, 전시회(신작품 수)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시청각적인 차이가 미미한 창작품을 신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외형적·예술적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학술연구심의회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업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전시) ① 국제저명 : (별표3-1)에 명기된 전시장에서의 작품 발표  
② 국제공인 : (별표3-2)에 명기된 전시장에서의 작품 발표  
③ 국내A급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남시, 광역시급 이상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가. (사)사립미술관협회 정회원 미술관
  - 나. (사)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전문화랑
  - 다. 경기도 및 광역시급 이상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상설전시장 또는 직접 설립한 재단법인시설.
  - 라. 외국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등의 전시공간
  - 마. 비 상업적 순수예술분야 기획전을 년 5회 이상 개최하고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전문직 학예사(큐레이터) 2명 이상이 상근하는 전문 전시장으로 해당 전시회 전시면적이 165㎡이상인 전시장. 단,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직 학예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년 3회 이상의 해외 국제전 참가실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A급 전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바. 중앙행정부처 또는 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예술행사의 야외 전시공간

\* 위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시장 중 COEX, BEXCO, 아라리오갤러

리, 성남아트센터, 각 도의 도립미술관(단, 해당 전시회 전시면적 기준 300㎡ 이상인 경우 인정)는 A급 전시장에 준하여 인정함.(개정 2016.05.24.)

④ 국내B급 : 국내A급 이외의 전문전시장으로 다음 각항의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가. 년 5회 이상 비상업적 순수예술분야 전시회 개최

나. 해당 전시회 전시면적 100㎡이상

다. 전시기획을 담당하는 전문직 1명 이상이 상근하는 전시장

⑤ 국제저명, 국제공인 전시를 제외한 해외전시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A,B급 전시장 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해외 소재 상설 전문전시장(미술관 또는 갤러리)에서의 전시는 국내A급으로, 그 외 비상설 전시장, 외국대학에서의 전시, 기타전시장에서의 전시는 국내B급에 준하여 인정함.

9. (디자인분야 단체전)디자인분야 소속 또는 디자인분야를 전공한 교원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가지는 학회, 중앙행정부처 및 광역시 이상의 국가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본회 주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의 초대작가로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에는 전시장 등급과 상관없이 국내A급 개인전 배점의 40/100을 인정한다.(개정 2017.03.01.)

10. 친목차원의 전시회, 종교적 성향 모임의 회원전, 동문전, 교육활동(학생들 교육용 전시 참여 및 기획)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11. (전시기획 및 총감독) ① A급 : 별표3-1, 3-2의 국제저명전시장 또는 국제공인전시장에서 국제적 규모(10개국이상 참가)로 전시되는 비상업적분야의 전시회 기획 및 총감독을 말한다. 단, 전시회 기획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N(전시기획자 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② B급 : 국내A급 전시장 이상에서 국제적 또는 전국적 규모로 전시되는 비상업적 분야 전시회의 총감독을 말한다. 단, 3개국 이상 또는 10개 기관 이상이 참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12. (공모전) (별표3-3)에 명기된 국내외 저명 공모전에서의 1위~3위권 이내의 수상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3-1)

국제저명 전시
Moma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테이트모던, La Moca현대미술관,

3-2-3~22 제3편 행정

카셀도큐멘타, 베니스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 휘트니비엔날레, 리용비엔날레, 풍피두미술관, 이스탄불비엔날레

(별표3-2)(개정 2016.05.24., 2016.09.30.)

국제공인 전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현대미술관, 선재미술관, 리움미술관, 일민미술관, 로댕갤러리</li> <li>2. 시드니비엔날레,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요코하마트리엔날레,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크라코프판화비엔날레, 기요비엔날레, 상하이비엔날레, 벤쿠버비엔날레, 골든비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li> <li>3.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대구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개정 2016.09.30.)</li> <li>4. 위와 동등한 수준의 G8(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러시아)국가 주요 도시에 소재한 세계 유수 미술관(단, 건물면적 기준 800㎡이상으로,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 시 인정함)</li> <li>5. 중국의 국(시)립 미술관(단, 북경 및 상해 소재 미술관에 한해 인정하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미술관으로 년 5회 이상 순수예술분야 기획전 개최, 건물 면적 800㎡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 입증자료 제출 시 인정함)</li> </ol>

(별표3-3)

국내외 저명 공모전	
A급	<p>*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서 1위~3위권 이내 수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Red dot design awards</li> <li>2. IF design awards</li> <li>3. IDEA design awards</li> </ol>
B급	<p>*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서 1위~3위권 이내 수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미술대전</li> <li>2. 동아미술제</li> <li>3. 대한민국공예대전</li> <li>4.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li> </ol>

(별표 4)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체육)

구분	연구업적		배점(%)
체 육	임원	국제공인 심판 자격	50
		국내공인 심판 자격	30
	선수(본인)	올림픽 출전 및 세계선수권대회 입상	200
		아시안게임 출전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	100
		전국대회 입상 1회(본인)-연 1회 인정	50
	지도	(국제대회 이상) 우승	100
		국제대회 준우승, (전국대회 규모 이상)우승	50
		(전국대회 규모 이상)준우승	30

❖ 체육계열 연구실적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 (임원) ①국제공인 심판 자격은 국제체육단체에서 주관(주최)하고 한국대표 선수단이 파견되는 3개국 이상이 출전하는 스포츠대회에서 의 주·부심 및 배심, 소청위원 등을 뜻하며, 엔트리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  
②국내대회 심판자격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승인한 스포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스포츠대회에서의 주·부심을 말한다.
- (지도) ①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2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를 말하며, 연간 100% 이내에서 인정한다.  
②국제대회란,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종목으로 국제단체 및 특정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예: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와 같은 급에 해당하는 대회)를 말한다.

(별표 5)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예·체능 제외)

구 분	연 구 업 적		배점(%)
의상 관련	의상 작품발표회	개인전	100
		2인전	50
		단체(3인 이상)	30
건축 관련	5개국 이상 참여 국제공인 현상설계 및 공모전 3위권 이내		150
	3개국 이상 참여 국제공인 또는 국내공인 현상설계 및 공모전 3위권 이내		100
	국내공인 발표회 초대전 출품 전시(연 1회 인정)		30
	전공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된 설계 작품 또는 설계작품 평론(전면 1페이지 이상, 연 1회 인정)		30
신문 방송 관련	전국방송(KBS,EBS,MBC,SBS) TV프로그램 연출	50분 이상	100
		30분~50분미만	70
		30분 미만	50
	Cable, 지역, 위성 TV프로그램 연출	50분 이상	50
		30분~50분미만	30
		30분미만	20
	공연예술의 기획 및 연출	50분 이상	30
		30분~50분미만	15

1. (의상) ①개인전은 신작이 12작품(2인전은 6작품)이상이어야 하고, 단체전은 국공립기관 및 패션전문기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가지고 있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발표회로서 연 최대 100%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상작품발표회의 개인전 및 2인전 실적은 학술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전시장에서의 전시만을 인정한다.
2. (건축관련) ①기준에 업적으로 인정받은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②국제공인 현상설계 및 공모전이라 함은, 저명한 건축 관련 단체 및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고 G8국가 중 최소 2개국 이상을 포함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현상설계 및 공모전을 말한다.  
 ③국내공인 현상설계 및 공모전이라 함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공인 현상설계 및 공모전 또는 중앙행정부처, 광역시급 이상의 국가기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현상설계 및 공모전을 말한다.

- ④국내공인 발표회란, 정부 및 국가기관, 중앙언론사, 공공문화재단, 관련분야의 저명한 학술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발표회에서의 초대전, 기획전 또는 공모전 출품 전시를 말한다.
  - ⑤전공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된 설계작품 인정 시 기사(뉴스) 또는 소식지 형태의 작품 게재는 제외한다.
  - ⑥공동연구업적물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1/N$ (참여자 수)로 한다.
3. (신문방송) ①신문방송관련 TV프로그램 기획은 해당 배점의 30/100을 인정하되, 연 최대 30%에 한해 인정한다.
- ②공연예술의 기획 및 연출 평정은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③ 전국 지상파 방송 TV프로그램 연출은 연 최대 100%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6) (신설 2012.08.10.)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연기예술)

구분	분야	업적내용	배점(%)			
			국제		국내	
			저명	일반	저명	일반
공통	공연, 영상	프로그램머 · 페스티벌 총감독 ※ 매 학년도 1개 활동만 인정	150	70	70	50
공연 (연극, 뮤지컬)	연극 · 뮤지컬 공연	연출, 제작, 예술감독, 기획, 주연	200	100	100	70
		드라마트루기, 희곡, 기술감독, 조연	150	70	70	50
		기타출연	100	50	50	30
	연극 · 뮤지컬 예술제 수상	연출, 제작, 예술감독, 기획, 주연	250	120	120	100
		드라마트루기, 희곡, 기술감독, 조연	200	100	100	70
		기타출연	150	70	70	50
	기타 장르 공연(오페라, 무용, 음악회 등)	연출, 안무, 예술감독, 주 · 조연 ※ 매 학년도 1개 작품만 인정	70	50	50	30
영상 (영화)	장편영화	연출, 시나리오, 촬영, 주연	200	100	100	70
		제작(프로듀서), 기획, 부문별 감독, 조연, 편집	150	70	70	50
		기타출연	100	50	50	30
	단편영화	연출, 시나리오, 촬영, 주연	150	70	70	50
		제작(프로듀서), 기획, 부문별 감독, 조연, 편집	100	50	50	30
		기타출연	70	30	30	15
	장편영화제 수상	연출, 시나리오, 촬영, 주연	250	120	120	100
		제작(프로듀서), 기획, 부문별 감독, 조연, 편집	200	100	100	70
		기타출연	150	70	70	50
	단편영화제 수상	연출, 시나리오, 촬영, 주연	200	100	100	70
		제작(프로듀서), 기획, 부문별 감독, 조연, 편집	150	70	70	50
		기타출연	100	50	50	30

※ 기타 출연자 중 엑스트라 및 카메오 출연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분야	업적내용	배점(%)		
			90분 이상	40~90분 미만	40분 미만
영상 (TV콘텐츠 등)	TV 콘텐츠	연출, 제작, 프로듀서, 기획, 편집, 시나리오, 출연	200	100	70
		부문별 감독, 조연	150	70	50
		기타출연(엑스트라 및 카메오 제외)	100	50	30
	기타 영상물 (교육, 홍보, CF, 디지털 미디어 등)	연출, 제작, 프로듀서, 기획, 편집, 시나리오, 출연	100	70	50
		부문별 감독, 조연	70	50	30
		기타출연(엑스트라 및 카메오 제외)	50	30	15

※ 기타 영상물(교육, 홍보, CF, 디지털미디어 등)은 매 학년도 1개 작품만 인정한다.

❖ 연기예술분야 연구실적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

1. 공통사항

- ① 동일한 작품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배점의 1개 역할만 인정한다.
- ② ‘수상’이라함은 아래내용 중 열거된 국제 저명 연극제, 국내 저명 연극제, 국제 저명 영화제, 국내 저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만을 인정한다.
- ③ 공연 및 영상분야 업적 중 기 인증 받은 업적이 이후 연극·뮤지컬 예술제 및 영화제에 초청되거나, 수상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인증 점수를 대체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적의 인정기준일은 초청일자 또는 수상일자가 아닌, 최초 업적발표일자로 한다.
- ④ 시나리오, 희곡, 극본에 있어서 각색 및 번역은 창작의 50%를 인정한다.
- ⑤ 비 상영 및 미 공연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기타출연 중 엑스트라 및 카메오 출연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극(뮤지컬)의 인정기준

①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

G8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 극단이 제작한 작품으로서 G8국가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이나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또는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의 공식 초청을 받은 60분 이상의 작품

3-2-3~28 제3편 행 정

※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 :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영국 에딘버러페스티벌, 베를린국제연극제, 카이로국제실험연극제, 모스크바체홉국제연극제 (단, 앞서 표기된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 이외의 국제 연극(뮤지컬) 예술제를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와 동일하게 인정할지 여부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제 일반 연극(뮤지컬)

“국제 저명 연극(뮤지컬)”을 제외한, 국외의 전문극단에서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극장(15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③ 국내 저명 연극(뮤지컬)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300석 이상) 및 연극전용소극장(15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또는 국내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의 공식 초청을 받은 60분 이상의 작품

※ 국내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 : 서울연극제, 전국연극제, 동아연극상, 서울공연예술제, 대한민국연극대상, 부산국제연극제,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춘천국제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단, 앞서 표기된 “국내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 이외의 국내 연극(뮤지컬)예술제를 “국내 저명 연극(뮤지컬)예술제”와 동일하게 인정할지 여부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④ 국내 일반 연극(뮤지컬)

“국내 저명 연극(뮤지컬)”을 제외한, 국내의 전문극단이 제작하고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1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3. 기타 장르 공연의 인정기준

① 국제 저명 공연

G8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의 전문공연단체가 제작한 작품으로 해당국가의 전문공연장(8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② 국제 일반 공연

“국제 저명 공연”을 제외한, 국외의 전문공연단체가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③ 국내 저명 공연

국내의 전문공연단체가 제작하고 예술의 전당, 영산아트홀, 금호아트홀, KBS 홀,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청주문화예술회관, 호암아트홀, 국립국악원, 성남

아트센터, 아르코예술극장, 동숭아트센터, 충무아트홀,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④ 국내 일반 공연

“국내 저명 공연”을 제외한, 국내의 전문공연단체가 제작하고 국내의 전문공연장(5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공연한 작품

4. 영상(영화)의 인정기준

① “단편영화”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 7항에 따라,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② 국제 저명 영화

G8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G8국가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또는 국제 저명 영화제의 공식 초청을 받은 작품

※ 국제 저명 영화제 : 칸, 베를린, 베니스, 토론토, 아카데미, 카를로비바리, 산세바스찬, 선댄스, 로테르담, 모스크바, 벤쿠버, 몬트리올, 카이로, 홍콩, 도쿄, 뉴욕 국제영화제, 글레르 몽페랑, 탐페레,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암스테르담, 야마카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 공식 초청작 (단, 앞서 표기된 “국제 저명 영화제” 이외의 국제 영화제를 “국제 저명 영화제”와 동일하게 인정할지 여부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③ 국제 일반 영화

“국제 저명 영화”를 제외한, 국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외의 전문상영관(30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④ 국내 저명 영화

국내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국내의 전문상영관(15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또는 국내 저명 영화제의 공식 초청을 받은 작품

※ 국내 저명 영화제 :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전주영화제, 광주영화제, 대중상영화제, 청룡영화제, 대한민국영화대상, 백상예술대상, 춘사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은 작품 (단, 앞서 표기된 “국내 저명 영화제” 이외의 국내 영화제를 “국내 저명 영화제”와 동일하게 인정할지 여부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⑤ 국내 일반 영화

“국내 저명 영화”를 제외한, 국내의 제작사가 제작하고, 전문상영관(50석 이

상)에서 상영한 작품

5. 영상(TV콘텐츠 등)의 인정기준

- ① 연작의 경우 총 상영시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② TV콘텐츠는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공중파TV,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서 상영한 작품만 인정한다.
- ③ 기타 영상물(교육, 홍보, CF, 디지털미디어 등)은 국내·외의 전문제작사가 제작하고, 공중파TV,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DMB, 전문상영관(150석 이상)에서 상영한 작품 및 공인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된 것만을 인정한다.
- ④ 기타 영상물(교육, 홍보, CF, 디지털미디어 등)은 매 학년도 1개 작품만 인정한다.